

Lifetime
Value Creator

2019年 롯데백화점 공정거래 자율준수 편람



공정거래 자율준수 선언문

우리 롯데쇼핑(주)은 글로벌 경쟁 시대를 맞이하여 세계일류의 유통 기업으로 도약하는 계기를 마련하고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통한 유통거래 질서 확립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정거래법을 자율적으로 준수할 것을 선언한다.

하나, 우리는 협력업체와 동반자적 입장에서 상호협의를 하고,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불공정한 일체의 행위를 하지 않는다.

하나, 우리는 공정거래법 자율준수를 위한 관리자를 임명하여 법 준수를 위한 감독 및 감시 체제를 강화한다.

하나, 우리는 전 임직원 스스로 공정거래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한다.

하나, 우리는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경우 스스로 제재를 가하여 법 위반의 재발을 방지 한다.

2001년 09월 19일

롯데쇼핑주식회사



공정거래법의 이해

1. 공정거래법의 개요
2. 공정거래법의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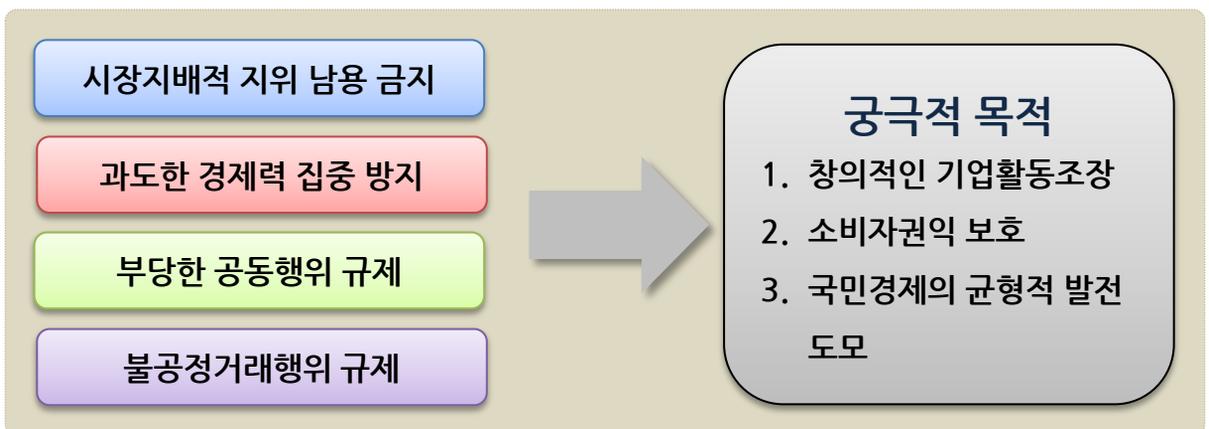
1. 공정거래법의 개요

1 공정거래법의 의의

- 공정거래제도는 '사유재산제도와 영업활동의 자유'를 전제로 하되 개인이나 기업의 자유로운 활동이 공공의 이익에 피해를 주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되었음
-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의 촉진은 공정거래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목적이자 그 이념이므로 공정거래법은 시장경제질서의 기본을 유지하기 위한 법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중요성으로 인해 공정거래법을 경제헌법 또는 경제질서의 기본법이라고 부르기도 함

2 공정거래법의 목적

- 공정거래법 제1조에서는 “사업자의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과 과도한 경쟁력의 집중을 방지하고, 부당한 공동행위 및 불공정 거래행위를 규제하여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창의적인 기업활동을 조장하고 소비자를 보호함과 아울러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기술하고 있음



2. 공정거래법의 구성

1

공정거래법의 구성요약

- 공정거래법은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장구조 그 자체를 경쟁의 촉진에 도움이 되도록 만들어 가기 위한 법규정들과 시장의 거래과정에서 나타나는 경쟁제한행위나 불공정거래행위 등을 시정하기 위한 법규정들로 이루어져 있음

시장구조의 개선

- 경제규제 완화 및 경쟁제한 제도 개선
- 독과점적 시장구조의 개선
- 지주회사의 행위제한
- 경쟁제한적 기업결합의 금지
- 경제력집중의 억제

거래행태의 개선

-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금지
- 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 부당지원행위 규제
-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제한
- 부당한 국제계약 체결제한

2

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 1) 가격을 결정·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
- 2) 상품 또는 용역의 거래조건이나 그 대금 또는 대가의 지급조건을 정하는 행위
- 3) 상품의 생산, 출고, 소송 또는 거래의 제한이나 용역의 거래를 제한하는 행위
- 4)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을 제한하는 행위
- 5) 생산 또는 용역의 거래를 위한 설비의 신설 또는 증설이나 장비의 도입을 방해하거나 제한하는 행위

2. 공정거래법의 구성

- 6) 상품의 생산 또는 거래 시에 그 상품의 종류 또는 규격을 제한하는 행위
- 7) 영업의 주요부문을 공동으로 수행하거나 관리하기 위한 회사 등을 설립 하는 행위
- 8) 입찰 또는 경매에 있어 낙찰자, 경락자, 투찰가격 등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결정하는 행위
-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 외의 행위로서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 또는 사업 내용을 방해하거나 제한함으로써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

3

불공정거래 행위의 금지

- 1) 부당하게 거래를 거절하거나 거래의 상대방을 차별하여 취급하는 행위
- 2) 부당하게 경쟁자를 배제하는 행위
- 3)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거나 강제하는 행위
- 4)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
- 5) 거래의 상대방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 6) 부당하게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대하여 기지급금, 대여금, 인력, 상품, 용역 등을 제공하거나 현저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여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행위
- 7) 제1호 내지 제7호 이외의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

2. 공정거래법의 구성

4

부당지원행위의 금지

- 1) 부당하게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대하여 지급금, 대여금, 인력, 부동산, 유가증권, 상품, 용역, 무체재산권 등을 무상으로 제공하거나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여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행위
- 2) 지원행위란 지원주체가 지원객체에게 직접 또는 간접으로 제공하는 경제적 급부의 정상가격이, 그에 대한 대가로 지원객체로부터 받는 경제적 반대급부의 정상가격보다 높아 지원주체가 지원객체에게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는 작위 또는 부작위

※ 지원행위 요건

- ① 지원주체 → 지원객체, ②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

대규모유통업법의 이해

1. 대규모유통업법의 개요
2. 주요 위반유형 및 내용
3. 업무별 유의사항
4. 위반시 제재사항

1. 대규모유통업법의 개요

1 제정목적

-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이 법은 기존의 ‘대규모소매업고시’의 내용을 구체화하여 만든 일종의 특별법 임
-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대규모 유통업자와 납품업자 또는 매장임차인이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 보완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성장 및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2 용어정의

| | |
|----------------|---|
| <p>대규모유통업자</p> | <p>소비자가 사용하는 상품을 다수의 사업자로부터 납품 받아 판매하는 자 中</p> <p>① 직전 사업연도의 소매업종 매출액이 1천억 원 이상인 자 또는</p> <p>② 매장면적의 합계가 3,000㎡ 이상인 점포를 소매업에 사용하는 자</p> |
| <p>납품업자</p> | <p>거래형태에 상관없이 대규모유통업자가 판매할 상품을 대규모유통업자에 공급하는 자</p> |
| <p>매장임차인</p> | <p>대규모유통업자로부터 매장의 일부를 임차하여 소비자가 사용하는 상품의 판매에 사용하고 그 대가를 대규모유통업자에게 지급하는 형태의 거래를 하는 자</p> |
| <p>직매입</p> | <p>대규모유통업자가 매입한 상품 중 판매되지 아니한 상품에 대한 판매책임을 부담하고 납품업자로부터 상품을 매입하는 형태의 거래</p> |

1. 대규모유통업법의 개요

| | |
|---------------|---|
| <p>특약매입거래</p> | <p>대규모유통업자가 매입한 상품 중 판매되지 아니한 상품을 반품할 수 있는 조건으로 납품업자로부터 상품을 외상 매입하고 상품 판매 후 일정률이나 일정액의 판매수익을 공제한 상품판매대금을 납품업자에게 지급하는 형태의 거래</p> |
| <p>위수탁 거래</p> | <p>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가 납품한 상품을 자기 명의로 판매하고 상품 판매 후 일정률이나 일정액의 수수료를 공제한 상품판매대금을 납품업자에게 지급하는 형태의 거래</p> |
| <p>판매촉진행사</p> | <p>명칭이나 형식에 상관없이 상품에 대한 수요를 늘려 판매를 증진시킬 목적으로 행하는 모든 행사 또는 활동</p> |
| <p>반품</p> | <p>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 받은 상품을 되돌려 주거나 납품업자의 다른 상품과 바꾸는 등 형식에 상관없이 납품 받은 상품을 납품업자에게 실질적으로 되돌려 주는 모든 행위</p> |

2. 대규모유통업법 주요 위반 유형

1

주요 위반유형 및 내용

| 위반 유형 | 내 용 |
|-----------------------------|---|
| 제 2 조의 2 대규모유통업자의 의제 | <p>매장을 임대하는 자로서 임차인으로부터 상품 매출액에 연동되는 임차료 또는 이에 준하는 경제적 이익(이하 "임차료등")을 수취하는 사업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6조, 제8조,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 제15조의2,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는 "대규모유통업자"로 봄 (19.4.17부 시행)</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직전 사업연도에 자신이 임대한 매장에서 발생한 소매업종 매출액이 1천억원 이상인 자 2. 자신이 임대한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자 |
| 제 6 조 서면의 교부 및 서류의 보존 | <p>납품업자등과 계약을 체결한 즉시 납품업자에게 계약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포함)을 교부하지 아니하거나 사후에 계약을 체결한 행위</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계약서(약정서) 미체결/ 미교부/ 사후체결 ② 계약 등 관련 서류 미보존 (*계약 끝난 날부터 5년 보존) |
| 제 7 조 상품대금 감액의 금지 | <p>납품 받은 상품의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p> <p>※ 단, 납품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오손/훼손/하자 등 제외</p> |
| 제 8 조 상품판매대금의 지급 | <p>상품의 판매대금을 월 판매마감일부터 40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는 행위</p> <p>※ 40일이 지난 후 지급하는 경우 그 초과기간에 대해 지연이자(연 100분의 40이내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이자율)를 지급해야 함</p> |
| 제 9 조 상품 수령 거부·지체 금지 | <p>납품업자와 납품에 관한 계약 체결한 후 해당 상품의 수령을 거부하거나 지체하는 경우</p> <p>※ 단, 납품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오손/훼손/하자 등 제외</p> |

2. 대규모유통업법 주요 위반 유형

| 위반 유형 | 내 용 |
|-----------------------------------|--|
| <p>제 10 조 상품의 반품금지</p> | <p>정당한 사유 없이 납품 받은 상품을 반품하는 행위</p> <p>※ 예외적 반품허용</p> <p>① 특약매입거래의 경우로서 계약체결 시 반품조건을 구체적으로 약정하고 그 반품조건을 명시한 서면을 납품업자에게 준 경우</p> <p>② 위·수탁거래의 경우</p> <p>③ 납품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상품이 오손·훼손·하자가 있는 경우</p> <p>④ 납품 받은 상품이 계약한 상품과 다른 경우</p> <p>⑤ 대규모유통업자가 반품으로 인하여 생기는 손실을 스스로 부담하고 해당 납품업자에게 반품의 동의를 얻은 경우</p> <p>⑥ 직매입거래의 경우로서 일정한 기간이나 계절에 집중적으로 판매되는 상품(신선농·수·축산물 제외)에 대하여 계약체결 시 반품조건을 구체적으로 약정하고 그 반품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납품업자에게 교부한 경우</p> <p>⑦ 직매입거래의 경우로서 납품업자가 반품이 자기에게 직접적으로 이익이 된다는 객관적인 근거자료를 첨부한 서면으로 반품일 이전에 자발적으로 반품을 요청한 경우</p> <p>※ 신선 농·수·축산물 반품허용 기간</p> <p>납품업자가 신선 농·수·축산물을 납품한 시점부터 대규모유통업자가 검수 및 매입을 마친 시점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2일 초과 할 수 없음</p> |
| <p>제 11 조 판매촉진비용의 부담전가 금지</p> | <p>판매촉진행사를 실시하기 이전에 판매촉진행사에 소요되는 비용의 부담 등을 약정하지 않고 납품업자에게 부담시키는 행위</p> <p>※ 납품업자의 판매촉진비용 부담비율 100분의 50 초과 금지</p> |

2. 대규모유통업법 주요 위반 유형

| 위반 유형 | 내 용 |
|--|---|
| <p>제 12 조 납품업자 등의 종업원 사용금지 등</p> | <p>납품업자와 사전에 파견조건을 서면으로 약정하지 않고 판촉사원을 파견 받거나 백화점 고유업무에 종사하게 하는 행위</p> <p>※ 종업원 파견조건</p> <p>① 파견 종업원 등의 종업원 수, 근무기간 및 근무시간, 업무내용, 인건비 분담 여부 및 조건 등에 대해 사전에 명확히 약정해야 함</p> <p>② 상품의 판매 및 관리 업무에만 종사하여야 함 (통로, 공용 휴게실 등 청소지시 및 주차지원 등 백화점 고유업무 전가금지)</p> |
| <p>제 13 조 배타적 거래 강요 금지</p> | <p>부당하게 납품업자 등에게 배타적 거래를 하도록 하거나 납품업자 등이 다른 사업자와 거래하는 것을 방해하는 행위</p> |
| <p>제 14 조 경영정보 제공 요구 금지</p> | <p>부당한 방법으로 납품업자의 경영정보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금지</p> <p>※ 동법에서 금지하는 경영정보</p> <p>① 납품업자가 다른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상품의 공급조건(공급가격 포함)</p> <p>② 매장임차인이 다른 사업자의 매장에 들어가기 위한 입점조건</p> <p>③ 납품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의 원가에 관한 정보</p> <p>④ 다른 사업자에게 납품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점포에서 판매하는 상품의 매출액, 기간별 판매량 등 매출 관련 정보(동업계 매출)</p> |

2. 대규모유통업법 주요 위반 유형

| 위반 유형 | 내 용 |
|---------------------------------------|---|
| <p>제 14 조 경영정보 제공 요구 금지</p> | <p>⑤ 납품업자 등이 다른 사업자의 점포에서 하는 판매촉진행사의 시기/횟수 및 거래조건 등 판매촉진행사에 관한 정보</p> <p>⑥ 납품업자가 다른 사업자와의 거래에서 사용하는 EDI의 ID와 패스워드</p> |
| <p>제 15 조 경제적 이익 제공 요구 금지</p> | <p>납품업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금전, 물품, 용역 등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도록 강요</p> |
| <p>제 15조의 2 부당한 영업시간 구속금지</p> | <p>대규모유통업자는 매장임차인이 질병의 발병과 치료의 사유로 인하여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영업시간의 단축을 요구함에도 이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등 부당하게 매장임차인의 영업시간을 구속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p> |
| <p>제 16 조 매장 설비비용의 보상</p> | <p>납품업자가 지출한 매장의 설비비용에 대한 잔존가치에 대하여 보상의무를 다하지 않는 행위</p> <p>특약매입, 임대甲·乙 등 기본거래계약서상 전체 계약기간 中</p> <p>① 납품업자 등과 거래중단·거절, ② 매장위치·면적·시설을 변경하는 경우 해당 계약기간을 기준으로 남은 기간만큼 일할 보상하여야 함</p> <p>※ 매장설비비용 보상방법</p> <p>(인테리어비용 - 재활용집기비용) × [(계약기간 - 영업일수) / 계약기간]</p> <p>*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계약기간을 1년으로 간주</p> |

2. 대규모유통업법 주요 위반 유형

| 위반 유형 | 내 용 |
|-------------------------------------|---|
| <p>제 17 조 상품권 구입 요구금지 등</p> | <p>정당한 사유없이 납품업자 등에게 부당한 요구를 하는 행위</p> <p>※ 정당한 사유없는 불공정행위의 유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상품권이나 물품을 구입하게 하는 행위 ② 통상적인 시장의 납품 가격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납품하게 하는 행위 ③ 판매촉진행사 실시를 위하여 통상의 납품수량보다 현저히 많은 수량을 납품시키는 행위 ④ 납품업자 등의 의사에 반하여 판매촉진행사에 참여하게 하는 행위 ⑤ 한시적으로 인하하기로 약정한 납품 가격을 기한이 경과한 후에도 정상가격으로 환원하지 않거나 환원을 지연하는 행위 ⑥ 납품업자 등의 의사에 반하여 해당 납품업자 등의 상품에 관한 광고를 하게 하는 행위 ⑦ 일정한 점포의 매장에서 퇴점 하는 것을 방해하거나 납품업자 등의 의사에 반하여 자기의 다른 점포의 매장에 입점하게 하는 행위 ⑧ 계약기간 중에 납품업자 등의 매장 위치·면적을 변경하는 행위 ⑨ 계약기간 중에 마진·판매장려금의 비율 등 계약조건을 변경하는 행위 |
| <p>제 18 조 불이익 등 금지</p> | <p>납품업자 등이 대규모 유통업자의 법 위반 행위를 관계 기관에 신고하거나 알리는 행위를 이유로 납품업자 등에게 불리하게 계약조건을 변경하는 행위, 납품이나 매장 임차의 기회를 제한하는 행위 또는 계약기간 이행과정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p> |

3. 업무별 유의사항

1 서면의 교부 및 서류의 보존 의무 (대규모유통업법 제 6조)

1 개념

- 납품업자와 사전에 계약서(약정서)를 체결하고, 즉시 납품업자에게 계약사항이 명시된 서면 (전자문서 포함)을 교부해야 함
- 대규모유통업자는 납품업자와의 계약이 끝난 날로부터 5년 간 관련 서류를 보존해야 함

2 주요내용

| 구 분 | 내 용 |
|--------|---|
| 서면기재사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거래형태, 거래품목 및 기간 ② 납품방법, 납품장소 및 일시 ③ 상품대금의 지급수단 및 지급시기 ④ 상품의 반품조건 ⑤ 매장임차료, 마진 ⑥ 파견 종업원의 파견조건, 파견비용 분담 여부 및 조건 등 |
| 계약추정제도 | <p>납품업자는 대규모유통업자가 서면을 주지 않는 경우 계약내용에 관해 확인을 요청할 수 있으며, 대규모유통업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내용에 대한 인정 또는 부인의 의사를 명시한 회신을 해야 함.</p> <p>※ 기한 내 미회신時 납품업자가 통지한 대로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추정</p> |

3. 업무별 유의사항

1

서면의 교부 및 서류의 보존 의무 (대규모유통업법 제 6조)

| 구 분 | 내 용 |
|--------------------------|--|
| <p>서류보존의 의무 (5년)</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계약사항 적힌 서류, 계약내용 확인에 따른 통지 및 관련 서류 ② 상품대금 감액과 관련해 상품목록, 수량, 감액일자 등 적힌 서류 ③ 상품판매대금 지연 지급시 이자의 지급내역 ④ 상품의 수량을 거부하거나 지체한 경우 상품의 목록, 수량, 거부 또는 지체 사유 등이 적힌 서류 ⑤ 반품된 상품의 목록, 수량, 거래형태, 반품사유 등이 적힌 서류 ⑥ 판매촉진행사 약정과 관련한 서류 (약정서 및 공문 등) ⑦ 종업원 등의 파견조건 약정과 관련한 서류 ⑧ 대규모유통업자가 경영정보를 요구하기 위해 납품업자에게 제공한 서류 ⑨ 매장설비비용 보상을 하는 경우 보상사유 및 보상금액 등에 관한 서류 ⑩ 정당한 상품권을 구입하게 한 경우 상품권의 발행, 판매 및 회수내역을 적은 서류 ⑪ 정당한 사유로 납품업자 등의 매장 위치/면적/시설을 변경한 경우 그 변경기준 및 협의내용을 적은 서류 ⑫ 정당한 사유로 계약조건을 변경한 경우 그 협의내용을 적은 서류 |

3. 업무별 유의사항

1 서면의 교부 및 서류의 보존 의무 (대규모유통업법 제 6조)

3 범위반 심결례

• 000마트의 서면계약 사전 미체결 행위(2012.12)

000마트는 사전에 서면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08년 1월~12월 동안 6개 납품업체로부터 145명의 종업원을 파견 받아 63개 점포에서 근무시켰음 (시정명령 및 과징금 150백만원 처분)

• 홈쇼핑 6개사 불공정행위 과징금(2015. 3)

공정위는 납품업체를 대상으로 불공정행위를 한 홈쇼핑 6개사에 과징금 143억원을 부과함

TV홈쇼핑사들의 대표적인 불공정행위로는 방송계약서 미교부와 지연교부 임

대규모유통업법 6조는 TV홈쇼핑사가 납품업체와 방송 계약을 체결하면 즉시 서면 계약서를 교부하도록 하고 있음



체크포인트

① 거래개시일, 행사시작일 이전 계약 또는 약정 체결 완료

※ 전자계약시스템(ECS)상 파트너사 서명일자가 계약일 이전이어야 하며
당일 체결 불가 (최소 D-1일전 파트너사 서명여부 반드시 확인요망)

② 계약 체결 후 즉시 교부

③ 계약종료일로부터 5년간 서류 보존

3. 업무별 유의사항

전자계약시스템(ECS) 시행

- 롯데백화점은 2012년 1월 1일부로 시행된 대규모유통업법에 따른 CP운영계획의 일환으로 ECS(Electronic Contract Service)를 구축하여 전자계약을 실시 함
- 현재 당사 대부분의 계약 및 약정이 ECS를 통해 체결되고 있으며, 계약시작일 이전까지 계약서 및 약정서를 파트너사에 교부할 수 있게 함으로써 사후 계약 체결의 위험이 크게 감소 함
- ECS를 통하여 백화점과 파트너사간 계약서 및 약정서, 판촉행사 관련 공문 등의 체계적·영구적 보관이 가능해졌으며, 대규모유통업법에서 새롭게 만들어진 서류보존의무(5년)도 더욱 안정적으로 준수할 수 있게 되었음

The screenshot shows the ECS system interface. At the top, there is a navigation bar with the ECS logo and menu items: 메인, 사용자관리, 전자계약, 공문서, 게시판, and 사이트맵. Below this is a sub-menu for '전자계약' and '계약원료현황'. The main content area features a '계약 History' table with the following data:

| 순번 | 계약번호 | 차수 | 계약금액 | 계약일 | 계약시작일 | 계약종료일 | 잔량상태 | 계약서구분 |
|----|-------------|----|------|------------|------------|------------|------|-------|
| 1 | 16080829454 | 1 | | 2016-08-08 | 2016-08-11 | 2017-08-31 | 계약완료 | 표준계약 |

Below the table, there is a section titled '특약매입 기본거래계약서' (Special Purchase Basic Transaction Contract). It contains text stating that the contract is between Lotte Retail (주) and Lotte Department Store (주) and Lotte Department Store (주) and Lotte Department Store (주). It also includes '제 1 조 [목적]' (Article 1 [Purpose]) which states that the purpose of this contract is to secure the rights and interests of the parties in the special purchase transaction.

▲ 당사 ECS시스템 실제 화면

3. 업무별 유의사항

2 판촉비용 부담전가 금지 (대규모유통업법 제 11조)

1 개념

- 납품업자 등에게 판매촉진에 기여하지 않는 비용 등을 부담시켜서는 안되며 판촉비용을 부담시키는 경우에도 일정한 요건을 충족시켜야 함

2 판촉 행사별 유의사항 및 판촉비 전가유형

| 구 분 | 내 용 |
|-------------------------|--|
| 공동부담 판촉행사 | ① 판촉행사일 이전에 공동 판촉행사 약정서를 체결하고 즉시 교부할 것 ② 납품업자의 판매촉진이나 비용절감에 기여할 것 ③ 납품업자가 부담하는 판촉비용이 예상이익을 초과하지 않을 것 ④ 당사가 총 판촉비용의 50% 이상을 부담할 것 |
| 납품업자 전액 비용부담 판촉행사 | ① 당사의 어떠한 개입(강요, 권유, 요청 등)없이 납품업자 등의 '자체계획'으로 진행할 것 ② 2개 이상의 납품업자 등의 공동진행이 아닌 1개 납품업자만 진행할 것 ③ 판촉행사일 이전에 납품업자 의 행사진행 요청공문을 수령 및 보관할 것 ※ 당사가 기획한 행사의 경우, 파트너사의 자발성 인정되지 않음 |

3. 업무별 유의사항

2 판촉비용 부담전가 금지 (대규모유통업법 제 11조)

| 구 분 | 내 용 |
|---|---|
| <p style="text-align: center;">판촉비용 부담 전가의 유형</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납품업자 등과 사전약정 없이 일방적으로 광고 및 경품행사 등의 판촉행사를 실시한 후 판촉비용을 납품업자에게 부담시키는 행위 ② 납품업자와 사전에 광고비용, 판매사원 인건비 및 모델방송 출연료 등의 부담에 대해서만 약정한 뒤, 판매도중에 사전약정에 없던 사은품 제공행사를 실시하고 납품업자에게 비용을 전가하는 행위 ③ 의류품목에 대한 경품행사를 진행하면서 식품 등 의류 이외의 상품을 납품하는 업체에게 경품비용을 부담시키는 행위 ④ 납품업자와 사전에 판촉비용 등의 부담에 대해 사전 약정을 체결하였으나, 대규모유통업자가 당해 판촉행사로 인해 얻은 이익에 비해 현저하게 적은 판촉비용을 부담한 경우 |

3 법위반 심결례

• 000홈쇼핑 판촉비용 부담 전가 행위(2015. 03)

000홈쇼핑은 방송시간, 방송종료 후 2시간 이내의 주문에 소요되는 판촉비용을 전액 납품업자에게 부담시키고, 2시간 이후의 주문에 소요되는 비용만 5:5의 비율로 부담하기로 약정하여 총 판촉비용의 99.8%에 해당하는 56억 5,800만원을 146개 납품업자에게 부담시켰음

3. 업무별 유의사항

2 판촉비용 부담전가 금지 (대규모유통업법 제 11조)



체크포인트

- ① 판촉행사 이전에 판촉행사 약정서 체결하고, 즉시 납품업자에게 교부
- ② 공동판촉행사 진행 시 납품업자의 판촉비용 부담비율 50% 초과 금지
 - ※ 납품업자가 차별화된 판촉행사를 실시하는 경우, 상호 협의하여 부담비율 정할 수 있음
- ③ 행사일 이전에 행사진행 요청공문 수령 및 보관
- ④ 파트너사에 대해 자발적 판촉행사(납품업자 전액 비용부담 판촉행사)를 진행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절대 금지

3. 업무별 유의사항

3 부당한 경영정보 제공요구 금지 (대규모유통업법 제 14조)

1 개념

· 대규모유통업자가 부당한 방법으로 납품업자의 경영정보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자체를 금지

2 주요 내용

| 구 분 | 내 용 |
|---------------------------------------|--|
| <p>경영정보에 해당되는 범위</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납품업자 등이 납품하거나 판매하는 상품의 원가정보 ② 납품업자 등이 다른 사업자에게 납품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점포에서 판매하는 상품의 매출액, 기간별 판매량 등 매출 관련 정보 ③ 납품업자 등이 다른 사업자의 점포에서 하는 판매촉진행사의 시기, 횟수, 및 거래조건 등 판매촉진행사에 관한 정보 ④ 납품업자 등이 다른 사업자와의 거래에서 사용하는 전자적 정보교환 전산망의 고유 식별 명칭, 비밀번호 |
| <p>대규모유통업자가 경영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서면기재 사항</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경영정보 제공을 요구하는 목적 ② 비밀유지방법 등 요구 대상 정보의 비밀 유지에 관한 사항 및 비밀침해 시의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③ 경영정보 요구일자, 제공일자 및 제공방법 ④ 경영정보 제공 요구가 불가피함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사항 |

3. 업무별 유의사항

3 부당한 경영정보 제공요구 금지 (대규모유통업법 제 14조)

3 법위반 심결례

- 000백화점의 부당한 경영정보 제공 요구 행위(2013. 11)

000백화점은 2012.1~2012.5 기간 동안 경쟁백화점에 중복 입점해 있는 35개 파트너사에 경쟁사의 매출 자료 등 정보 제공을 요구하였음 (시정명령 및 과징금 4,573백만 처분)



체크포인트

- ① 경쟁사 매출, 대비율 등 불필요한 자료 작성 금지, 작성 지시 및 보고 요청 금지
- ② 동법에서 금지하는 경영정보란?
 - 납품업자 상품의 원가정보 / 상품의 매출액, 기간별 판매량 등 매출정보
 - 판촉행사 시기,횟수, 거래조건 등 판촉행사정보 / EDI 의 ID, PW 등

3. 업무별 유의사항

4. 납품업자 등의 종업원 사용금지 (대규모유통업법 제 12조)

1. 개념

- 납품업자 등으로부터 종업원 등을 파견 받아 대규모 유통업자의 업무에 종사시키거나 자기가 직접 고용하는 종업원 등의 인건비를 납품업자에게 부담시키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 함

2. 주요 내용

| 구 분 | 내 용 |
|------------------------------------|--|
| <p>종업원 파견조건</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파견 종업원 등의 종업원 수, 근무기간 및 근무시간, 업무내용, 인건비 부담 여부 및 조건 등에 대해 사전에 명확히 약정해야 함 ② 상품의 판매 및 관리 업무에만 종사하여야 함 |
| <p>종업원 파견 받을 수 있는 예외사유</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대형유통업자가 납품업자로부터 파견된 종업원의 인건비 등 제반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② 납품업자 등이 종업원 파견에 따른 예상이익과 비용의 내역 및 산출근거를 객관적으로 작성하여 자발적 파견을 요청하는 경우 ③ 상기 위 ①, ② 해당되지 않을 경우에는 특수한 판매기법 또는 능력을 지닌 숙련된 종업원을 파견 받는 경우 |

3. 업무별 유의사항

4. 납품업자 등의 종업원 사용금지 (대규모유통업법 제 12조)

| 구 분 | 내 용 |
|----------------------------|---|
| <p>파견약정서 필수기재사항</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종업원의 수 ② 종업원 근무기간 ③ 종업원 업무내용 ④ 인건비 부담 조건 |
| <p>종업원 파견 부당강요의 유형</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납품업자가 자기 상품의 판매촉진을 위해 파견한 종업원을 대규모 유통업자의 고유업무인 계산대, 청소업무 등에 종사 시키는 경우 ② 납품업자의 종업원 파견에 관해 구체적인 약정 없이 대규모유통업자의 임의대로 파견 및 철수를 요청하거나 파견 종업원의 업무범위 및 인건비 수준 등을 결정하는 행위 ③ 대규모유통업자의 재고정리 업무를 위하여 고용한 임시 직원의 인건비를 납품업자에게 부담시키는 행위 |
| <p>판촉사원 가이드라인</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정위는 종업원 파견 관행을 개선하고, 파견 종업원에 대한 판매목표 강제 및 남용행위 등을 방지하고자 판촉사원 가이드라인 발표 ('13. 7월) · 판매촉진과 인건비 절감 등을 이유로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체로부터 판촉사원을 파견 받는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 됨 |

3. 업무별 유의사항

4 **납품업자 등의 종업원 사용금지** (대규모유통업법 제 12조)

3 법위반 심결례

· 000마트의 판촉사원 인건비 부당 전가 행위(2013. 11)

000마트는 납품업자가 고용한 판촉사원을 자사 종업원으로 전환한 뒤 인건비를 상품판매대금 공제, 상품 무상납품, 판매장려금 추가 징수 등의 방식으로 납품업체로부터 강제로 받아간 것으로 드러남 (과징금)



체크포인트

① 상품판매·관리 외 백화점 고유 업무 종사 불가

※ 정기재고조사 재고파악, 공용공간 청소 등

② 판촉사원 파견 및 교체 요청 불가

※ 파트너사의 자발적 파견에 의해서만 근무 가능 / 판촉사원 근태, 교체 등 관여 불가

③ 판매목표 달성 강요 행위 금지

3. 업무별 유의사항

5 매장설비 비용의 보상 (대규모유통업법 제 16조)

1 개념

- 납품업자가 인테리어 공사를 시행한 시점에서 既 체결한 계약기간 중 기간 만료 이전에 매장 위치, 면적, 시설을 변경하거나 거래 중단/거절하는 경우에는 기존 매장에 대해 인테리어 비용을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2 주요 내용

| 구 분 | 내 용 |
|--|--|
| <p>기초시설 (바닥, 천정 등) 비용분담 기준</p> | <p>① 원칙 : 기초시설은 전체 점포의 근간을 이루는 기본시설이므로 대규모유통업자가 비용 부담하는 것이 원칙 임</p> <p>② 예외 : 납품업자가 자신의 고유사양으로 기초공사를 시행하려는 경우 상호 협의 후 파트너사 100% 비용 부담 가능</p> |
| <p>대규모유통업자 사유로 발생한 인테리어 공사비용 (MD개편, 리뉴얼 등)</p> | <p>- 거래형태/ 파트너사 규모/ 매장이동時 유불리 등에 따라 분담비율 상이 ex) 중소기업의 경우, 불리한 이동時 → 백화점 100% 부담</p> <p>※ 상세 사항은 인테리어 분담기준 가이드라인 참조 (P.31)</p> |

3. 업무별 유의사항

5 매장설비 비용의 보상 (대규모유통업법 제 16조)

| 구 분 | 내 용 |
|---------------------------------------|---|
| <p>납품업자 사유로 발생한 인테리어 공사비용</p> | <p>파트너사 브랜드 자체 컨셉 변경 등으로 인하여 자발적으로 서면을 통해 MD개편을 요구하는 경우 서로 협의하여 분담비율 정할 수 있음</p> |
| <p>인테리어 보상금 산정방법</p> | <p>$(\text{인테리어비용} - \text{재활용집기비용}) \times [(\text{계약기간} - \text{영업일수}) / \text{계약기간}]$</p> <p>*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계약기간을 1년으로 간주</p> <p>* 파트너사의 사유에 따라 일부 집기 등을 재활용하는 경우, 파트너사와 협의를 통해 보상에서 제외 될 수 있음.</p> <p>(공문 등 증빙필요)</p> |

3 범위반 심결례

• 000백화점의 인테리어 비용 전가 행위(2002.10)

000백화점은 매장 MD時 관행적으로 납품업체에게 비용을 부담시켜 왔으며, 납품업체는 지속적인 거래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어쩔 수 없이 비용을 부담하였음 (시정명령)

※ 납품업체가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사전에 비용 내역에 관한 약정이 체결되어야 함

※ 대규모유통업법 시행 전 행위로서 공정거래법 및 대규모소매업고시 적용

3. 업무별 유의사항

5 매장설비 비용의 보상 (대규모유통업법 제 16조)



체크포인트

- ① 파트너사 의사에 반하는 매장 이동 및 인테리어 변경 금지
- ② MD 품의時 컴플라이언스팀 사전 합의 필수
- ③ 인테리어공사 시행 前 약정서(전자계약) 체결 필수
- ④ 매장이동 요청 및 퇴점(브랜드종료/자진철수 등) 관련 증빙자료 보관
- ⑤ MD종료 이후 정당한 사유없이 파트너사 비용으로 추가 공사 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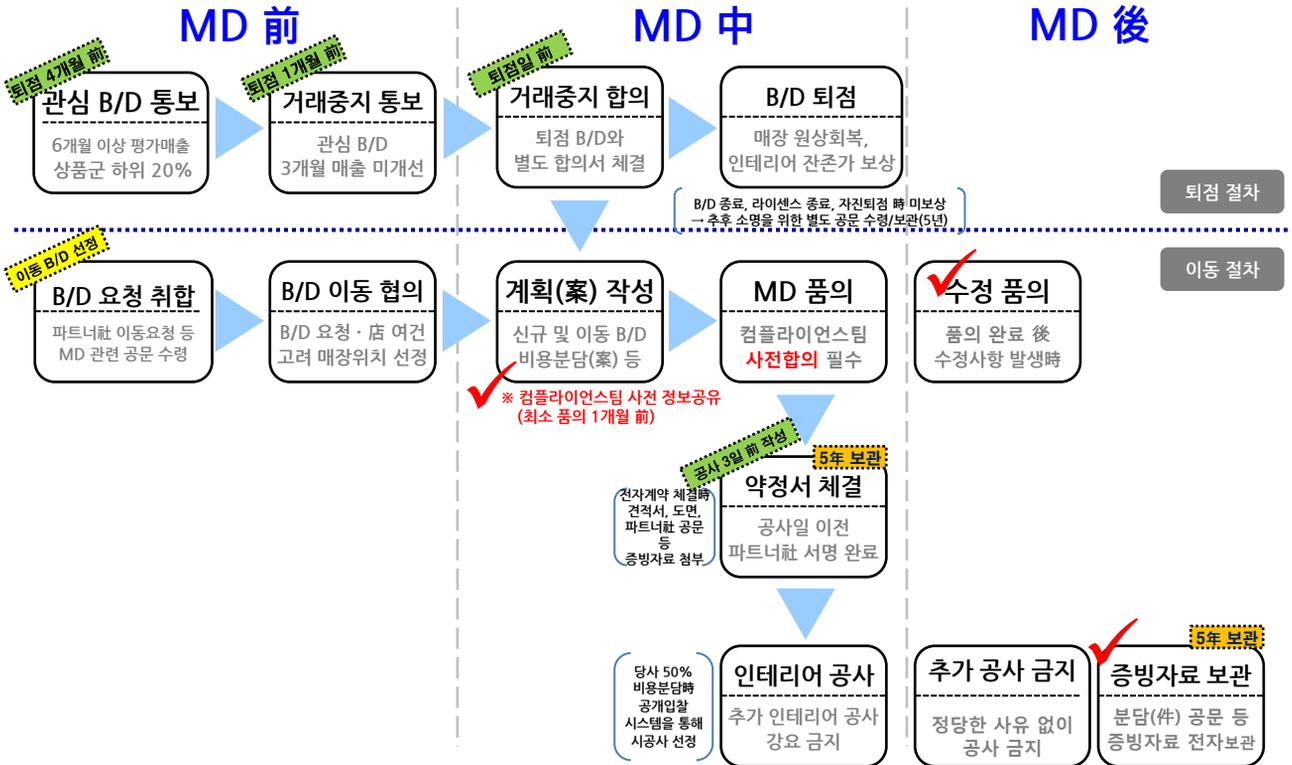
3. 업무별 유의사항

인테리어 비용 분담 가이드라인 (백화점 사유에 의한 매장이동時)

| ① 거래유형 | | ② 파트너사 규모 | ③ 매장이동이 파트너사에게 이익이 되는가? | ④ 당사 분담비율 | 유의사항 |
|--------|------------------------|-----------------------------|-------------------------|-----------|---|
| 특약매입 | | 중소기업 (법인총매출 1,500億 이하) | 불리 | 100% | ① 기존 인테리어 잔존가 보상 여부는 별도 검토 ② 당사 사양의 기초시설 공사비용은 당사 부담 ③ 기간 만료 後 이동의 경우, 기간만료 1개월 前 거래조건 변경요청 협의 공문 서면통보 이행 必 * <u>변경사유 및 변경내역·내용 등 서면 통보</u> ④ <u>상호 협의시 공문 등 소명자료 구비</u> * <u>공문 검수사항</u> : 구체적 이동요청사유, 퇴점의사, 인테리어비용 부담의사, 직인·공문일시 |
| | | 중소기업 외 (법인총매출 1,500億 초과) | 협의 가능 | | |
| 임대 | 계약기간 中 이동 (자동연장 포함) | | 불리 | 50% 이상 | |
| | 계약기간 만료 後 이동 | | 협의가능 | | |

3. 업무별 유의사항

MD진행 절차



3. 업무별 유의사항

MD진행 단계별 준수사항

| 구 분 | 내 용 |
|-------|--|
| MD 前 |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업체의 의사에 反하는 "매장 이동 및 인테리어 변경" 금지 ② 충분한 사전협의를 통하여 MD가 일방적으로 진행되지 않도록 유의 ③ 업체 퇴점 時 공문발송 등 업무절차 준수 (상품본부) ④ 파트너사 규모/거래형태 등 고려하여 "비용분담 적용 대상"이 되는 파트너사 선정 (상품본부/영업본부) |
| MD 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⑤ MD 품의 時 컴플라이언스팀 사전 합의 필수 (MD 계획단계부터 협의) ⑥ 파트너사와 50 : 50 인테리어 비용 분담 時 공개입찰시스템을 통한 시공사 선정 ⑦ 인테리어 공사 시행 前 약정서 체결 (전자계약) 필수 |
| MD 以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⑧ MD 종료 後 정당한 사유 없이 파트너사 비용으로 추가 공사 금지 ⑨ 인테리어 비용 분담(件) 증빙자료 보관 |

3. 업무별 유의사항

6 상품판매대금의 지급 (대규모유통업법 제 8조)

1 개념

- 상품의 판매대금은 월 판매마감일로부터 40일 이내에 납품업자에게 지급해야 함
- 상품대금 지급 기일을 초과할 경우, '상품판매대금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고시'(2015. 7. 1)에 따라 지연기간 만큼 연 15.5%의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함

2 주요 내용

| 구 분 | 내 용 |
|------------------------------------|--|
| <p>사후 고객관리를 위한 조치 (舊 대금보류)</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장 철수 이후에 고객의 교환, 환불 등 사후관리를 위해 납품업자 퇴점時 계약종료일 직전월의 판매대금의 20%를 납품업자가 보증보험에 가입 또는 보증금을 예치할 수 있음 (*계약서상 예치비율(%) 확인필요) * 다만, 고객의 사후관리 조치는 계약종료일이 속하는 판매마감일로부터 3개월 간 유효 함 |
| <p>부당한 지급지연의 유형</p> |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납품업자 또는 점포임차인에게 상품판매대금을 지급함에 있어 월 판매마감일로부터 40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행위 ② 당초 계약서에는 매월 15일에 마감하고 마감 후 15일 이내에 현금결제 하도록 약정하였으나, 이를 준수하지 않는 행위 |

3. 업무별 유의사항

6 상품판매대금의 지급 (대규모유통업법 제 8조)

3 범위반 심결례

· 000백화점의 상품판매대금 지급 지연 행위(2007. 8)

000백화점은 '05.1.1~12.31까지 기간 中 퇴점한 협력회사에 대하여 계약내용과 달리 판매마감일로부터 4개월 간 판매대금을 보류 후 지급하였다. (시정명령)

· 000홈쇼핑의 상품판매대금 지급 지연 행위(2015. 3)

000홈쇼핑은 납품업자로부터 위탁 받아 상품을 판매하고 그 판매대금을 받아 관리하면서 상품 판매 대금 총 177,000천원을 해당 납품업자에게 월 판매마감일로부터 40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으며, 월 판매마감일로부터 40일 이후에 지급하면서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았다.



체크포인트

- ① 상품의 판매대금은 월 판매마감일로부터 40일 이내에 납품업자에게 지급해야 함
 - ※ 상품판매대금 지연 지급 시 지연이율 고시에 따라 지연이자 지급해야 함
- ② 사후 고객관리를 위한 조치로 퇴점시 계약종료일 직전월의 판매대금의 20%를 납품업자가 보증보험에 가입 또는 보증금을 예치할 수 있음 (*계약서상 예치비율(%) 확인필요)
 - ※ 다만, 계약종료일이 속하는 판매마감일로부터 3개월간 유효 함

3. 업무별 유의사항

7 상품의 반품금지 (대규모유통업법 제 10조)

1 개념

- 납품 받은 상품을 되돌려 주거나 납품업자의 다른 상품과 바꾸는 등 형식에 상관없이 납품 받은 상품을 납품업자에게 실질적으로 되돌려주는 모든 행위를 금지 함
(단,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예외적으로 반품이 허용)

2 주요 내용

| 구 분 | 내 용 |
|-------------|---|
| 예외적 반품허용 | ① 특약매입거래의 경우로서 계약체결 시 반품조건을 구체적으로 약정하고 그 반품조건을 명시한 서면을 납품업자에게 준 경우 ② 위·수탁거래의 경우 ③ 납품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상품이 오손·훼손·하자가 있는 경우 ④ 납품 받은 상품이 계약한 상품과 다른 경우 ⑤ 대규모유통업자가 반품으로 인하여 생기는 손실을 스스로 부담하고 해당 납품업자에게 반품의 동의를 얻은 경우 ⑥ 직매입거래의 경우로서 일정한 기간이나 계절에 집중적으로 판매되는 상품(신선농·수·축산물 제외)에 대하여 계약체결 시 반품조건을 구체적으로 약정하고 그 반품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납품업자에게 교부한 경우 |

3. 업무별 유의사항

7 상품의 반품금지 (대규모유통업법 제 10조)

| 구 분 | 내 용 |
|-------------|--|
| 예외적 반품허용 | <p>⑦ 직매입거래의 경우로서 납품업자가 반품이 자기에게 직접적으로 이익이 된다는 객관적인 근거자료를 첨부한 서면으로 반품일 이전에 자발적으로 반품을 요청한 경우</p> <p>※ 신선 농·수·축산물 반품허용 기간</p> <p>납품업자가 신선 농·수·축산물을 납품한 시점부터 대규모유통업자가 검수 및 매입을 마친 시점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2일 초과 할 수 없음</p> |

3 법위반 심결례

• 000마트의 부당반품 행위(2016. 5)

000마트는 2013. 08 ~ 2015. 01 기간 동안 23개 납품업자에게 시즌상품이 아닌 14,922개 제품 (약 1억 원)을 시즌 상품을 반품하면서 함께 반품하였음

또한 2013. 09 ~ 2015. 07 기간 동안 전체 점포 중 40%이상에서 일정기간 동안 판매되지 않은 상품(26개 납품업자 총 16,793개(약 3.8억 원))을 반품함

3. 업무별 유의사항

7

상품의 반품금지 (대규모유통업법 제 10조)



체크포인트

- ① 정당한 사유 없이 반품하는 행위 금지
- ② 신선 농·수·축산물 반품허용 기간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2일을 초과할 수 없음
- ③ 부당반품의 유형
 - 재고조정을 이유로 반품하는 경우
 - 파트너사의 귀책사유(제품의 훼손, 오손 등)가 없는 고객의 환불, 교환 등의 이유로 반품하는 경우

3. 업무별 유의사항

8 경제적 이익 제공 요구 금지 (대규모유통업법 제 15조)

1 개념

- 납품업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금전, 물품, 용역 등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도록 강요해서는 아니 됨

(단, 연간거래 기본계약의 내용으로 판매장려금의 지급목적, 지급시기 및 횟수, 판매장려금의 비율이나 액수 등의 사항을 납품업자와 약정할 경우 판매 장려금을 받을 수 있음)

2 주요 내용

| 구 분 | 내 용 |
|-------------------|--|
| 부당한 경제상 이익 수령의 기준 | ① 대규모유통업자가 목표이윤 달성을 위해 납품업자 등으로부터 협찬이나 판매장려금을 징수하는 행위 ②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와 당초 연간기본계약 내용에 없던 판매장려금 부담 조건을 거래 도중에 신설하여 납품업자에게 부담시키는 행위 ③ 당초 예상에 비해 매출이 저조하다는 이유로 수익보전 차원에서 판매장려금을 징수한 행위 |

3. 업무별 유의사항

8 경제적 이익 제공 요구 금지 (대규모유통업법 제 15조)

3 범위반 심결례

· 000마트의 경제적 이익 제공요구 (2013. 11)

000마트는 2012. 4. 12~ 4. 15 기간 동안 여자 오픈 골프대회를 개최하면서 개최비용 14억 4천 200만원의 45.1%에 해당하는 총 6억 5천만원을 협찬금 명목으로 48개 납품업자로부터 제공 받았고 이에 과징금 3억 3천만원 부과 받았음



체크포인트

- ① 납품업자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금전, 물품, 용역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도록 하는 강요행위 금지
(단, 사전에 연간거래 기본계약의 내용으로 판매장려금의 지급목적, 지급시기 및 횟수 등을 납품업자와 약정한 경우는 가능)
- ② 부당한 경제적 이익제공 행위의 기준
 - 목표이윤 달성 또는 수익보전차원에서 협찬금 이나 판매장려금을 징수하는 행위
 - 연간 기본계약에 없던 판매장려금 부담 조건을 거래 도중에 신설하여 납품업자에게 부담시키는 행위

3. 업무별 유의사항

9 부당한 영업시간 구속 금지 (대규모유통업법 제 15조2)

1 개념

대규모유통업자는 매장임차인이 질병의 발병과 치료의 사유로 인하여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영업시간의 단축을 요구함에도 이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등 부당하게 매장임차인의 영업시간을 구속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018. 9.14 부)



체크포인트

- ① 개인사업자가 아닌 B/D 본사 등 법인이 계약서상 임차인인 경우, B/D본사와 협의
- ② 매장임차인의 질병의 경우, 진단서/의사소견서 등 관련 서류로 질병 등 확인 가능
 - ※ 관련 서류 등이 없는 경우, 파트너사 공문 등 수령하여 임차인의 의사 확인가능
- ③ 질병 등의 사유에 따른 영업시간 단축이 부득이한 경우, 영업시간 강제금지
 - ※ 대체근무 불가 또는 단축요구時 임차인의 의사에 반하여 영업강제 불가함

4. 위반時 제재사항

1 대규모 유통업법 위반時 제재사항

| 구 분 | 내 용 | 부과기준 | |
|-----|--|----------------------------|-------------------------|
| | | 정 률 (관련 매출액 산정 가능 時) | 정 액 (관련 매출액 산정 불가 時) |
| 과징금 | 매우 중대한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인 경우 | 관련 납품대금의 140% | 3~5억원 |
| | 서류보존의무 위반(원칙적 과징금) *현재 件 당 10百萬 과태료 부과 | | |
| 과태료 | 자료 미제출, 허위자료 제출, 정당한 사유 없는 조사 미출석 等 | 1억원 이하 (행위자 1천만원 이하) | |
| | 조사 거부·방해·기피 | 2억원 이하 (행위자 5천만원 이하) | |
| 형 별 | ① 배타적 거래 강요 ② 경영정보 제공 요구 ③ 보복행위 ④ 시정명령 불이행 ※ 양벌규정 - 법인 뿐만 아니라 개인도 처벌 가능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 | |

※ 입점업체 피해액의 3배 손해배상제 ('19.4.17 부 시행)

▶ 3배손해배상 행위대상

: 상품대금 부당감액, 부당반품, 보복행위, 납품업체 등의 종업원 부당사용

표시 · 광고법의 이해

1. 표시광고법의 개요
2. 부당한 표시광고의 유형

1. 표시광고법의 개요

1 부당한 표시·광고 판단 기준 및 유형

1 부당한 표시·광고 판단기준

- 진실성 위배 : 표시·광고 내용이 사실에 부합하지 않을 것
- 소비자오인성 : 소비자 오인성이 있을 것
- 공정거래저해성 :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을 것

2 부당한 표시·광고 유형

| 구 분 | 내 용 |
|--------------------|---|
| 허위·과장 표시·광고 | 사실과 다르게 또는 사실보다 지나치게 부풀려 표시·광고 |
| 기만적인 표시·광고 |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등의 방법으로 표시·광고 |
|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광고 | 비교대상 및 기준을 명시하지 않거나 객관적인 근거 없이 다른 사업자와 비교하여 우량 또는 유리하다고 표시·광고 |
| 비방적인 표시·광고 | 다른 사업자 또는 상품에 관하여 객관적인 근거 없이 불리한 사실만을 표시·광고하여 비방하는 행위 |

1. 표시광고법의 개요

2 표시·광고 용어설명

1 종전거래가격

- 당해 사업자가 당해 상품과 동일한 상품을 최근 상당기간(과거20일정도)동안 판매하고 있던 사실이 있는 경우로서 그 기간 동안 당해 상품에 붙인 가격,
단위 기간 중 당해 상품의 실 거래가격이 변동한 경우에는 변동된 최저가격

2 할인판매의 종류

| 구 분 | 내 용 |
|--------|--|
| 할인특매 | 일정기간 동안 가격을 인하하여 판매하다가 다시 행사가 끝나면 정상가격으로 환원시키는 판매 행위 |
| 가격인하 | 일정기간이 아닌, 일정시점부터 가격을 인하하여 판매하는 행위 (*할인특매와 구분) |
| 한정판매 | 기획된 상품이나 정상상품을 수량이나 가격, 시간을 한정하여 판매하는 행위 (반드시 한정대상과 수량 명기) |
| 염가판매 | 상설매장 또는 임시로 특설매장을 설치하여 판매시기가 지난 재고 상품, 하자가 있거나 열등한 상품을 판매하는 행위 |
| 정포정리판매 | 폐업이나 점포이전을 목적으로 자기가 취급하는 상품을 염가로 판매하는 행위 |

2. 부당한 표시광고의 유형

1 부당한 표시광고의 유형

1 허위·과장의 표시광고

표시·광고



실리트 가이타이너 헤스티아 통3종 냄비세트

(양수 24cm + 20cm + 18cm +
편수 16cm + 전골 24cm + 찜닭 28cm/10세트 한)

691,000원 ▶ **199,000원**

내용

- 실리트 가이타이너 헤스티아 냄비세트
691,000원 ▶ 199,000원으로 표시·광고
- 해당 상품을 『실리트』 제품으로 알고 구매한
고객이 『가이타이너』 제품임을 확인한 후
컴플레인 제기 → 공정위 신고
- 공정위는 『가이타이너』 상품을 판매하면서
부당하게 실리트 상품을 판매하는 것처럼
허위 과장 광고를 하였다고 판단하여
경고조치 ('11년 9월)

2. 부당한 표시광고의 유형

1 부당한 표시광고의 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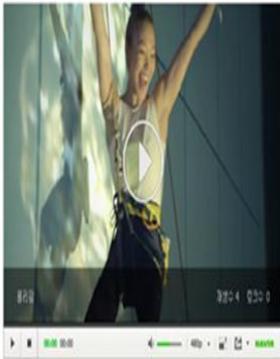
2 기만적인 표시광고

표시 · 광고

〈인터넷 블로그 ‘롤리O’ 게시글〉

목구멍까지 시원해지는 느낌.. 카스
후레쉬cf!! 오늘은 맥주가 급 땡긴다

..
..
게시판



광고인도 광고도 사담금 같이 인터넷 사용을 하여 오로지 물려받은 카스나 맥주..
이-나사랑 풍석오빠-블루록 같은 광고입니다

내용

- 공정위는 블로그를 통해 기만적 광고를 한 오비맥주,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카페베네 등에 총 3억 9백만원 과징금 부과 ('14년 11월)
- 해당 사업자들은 블로그 운영자에게 경제적 대가를 지급하고 상품 등의 추천, 보증글을 게재하면서 지급사실을 공개하지 않음
- 소비자 구매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가 지급사실을 은폐하여 일반 소비자를 기만한 행위로 판단**

2. 부당한 표시광고의 유형

1 부당한 표시광고의 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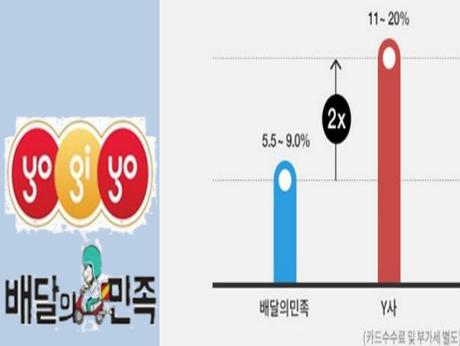
3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광고

표시 · 광고

내 용

배달의민족
주문중개 이용료(수수료)는
경쟁사 대비

1/2



• ‘요기요’는 배달앱 ‘배달의민족’이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광고를 했다고 공정위에 신고 (‘14년 11월)

• ‘배달의민족’은 ‘배달의 민족 주문중개 이용료는 경쟁사 대비 2분의 1’이라고 광고함

• ‘요기요’는 해당 정보의 출처를 밝히지 않았고 실제 요기요의 수수료 범위와 상이하므로 표시광고 위반이라고 주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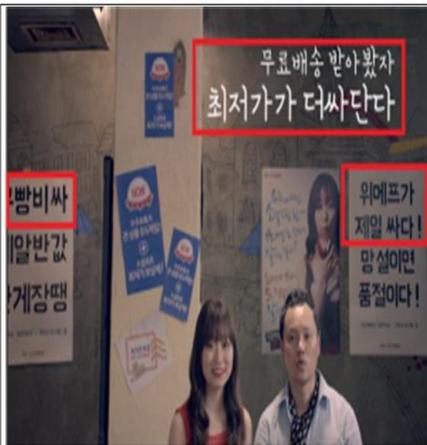
2. 부당한 표시광고의 유형

1 부당한 표시광고의 유형

4 비방하는 표시광고

표시 · 광고

〈 위메프의 유튜브 동영상 광고 〉



내 용

- 위메프는 유튜브 동영상을 통해 경쟁사업자 쿠팡보다 자신이 더 싼 가격에 판매한다고 과장 광고 ('13년 6월~12월)
- '구빵 비싸', '위메프가 제일 싸다', '무료배송 받아봤자 최저가가 더 싸단다' 등 표현 통해 자신이 판매하는 모든 상품이 가장 저렴한 것처럼 과장 광고
- 공정위는 위메프에게 표시광고법 위반에 따른 시정명령

영업현장 실천가이드

1. FAQ
2. 공정거래 Check LIST
3. 직권조사時 행동요령

1. FAQ

1

MD관련 자주 묻는 질문

1) 업체의 의사에 반하면, 이동을 시킬 수가 없나요? MD를 하지 말라는 건가요?

MD를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일방적인 MD진행으로 인하여 업체에 인테리어 비용 부담을 주지 말라는 취지**입니다. 공정위는 백화점 사유에 의한 MD시에는 이유 불문하고, 백화점이 인테리어 비용을 부담하도록 정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당사는 업체와 협의가 잘되고, 유리한 매장이동인 경우에 한하여 업체 부담 인테리어가 가능함을 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단 파트너사의 규모가 중소기업이고 불리한 매장이동인 경우 백화점이 100% 비용부담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업체가 절대로 신고 안 할 겁니다. 그럼 협의가 잘된 거 아닌가요?

업체가 이동에 최종동의를 하는 경우에도 **‘당사의 거래상 우월적 지위로 인하여’ 면적 축소 등 불리한 이동이 명백하다면 업체 의사에 반하는 이동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업체의 신고 가능성과 별개로 공정위는 **정기 백화점 직권조사 및 상시 현장조사, 서면실태조사(3개년 인테리어 현황 제출)**를 통하여 인테리어 비용전가를 규제하고 있습니다.

1. FAQ

1

MD관련 자주 묻는 질문

3) MD평가 순위에 따라 매장 재배치, 리뉴얼 시키면 되지 않나요?

MD 평가 순위에 따른 매장이동은 당연히 가능한 것이 아니라, 100% 당사 사유에 의한 MD입니다.(계약서상 근거없음)

따라서, 당사 사유에 의한 MD時 거래형태 및 업체규모 등을 고려하여 업체에 불리한 이동인 경우에는 인테리어 비용을 업체에 전부 부담시킬 수 없습니다.

당사 사유에 의한 MD時 업체에 불리한 이동 後 이동한 매장위치에서의 인테리어 비용 전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4) 합의 검토시 업체공문을 확인하나요? 품의 결재 후에 나중에 확인하면 안되나요??

당사는 정기MD時 백화점의 일방적인 MD가 아닌 **업체 사전요청 · 이동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매장위치를 조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품의 시점에는 업체 및 위치선정이 완료되었다고 볼 수 있고, 이러한 **매장 위치 조정**은 **업체의 사전 요청공문을 취합한 후 계획(案)으로 작성되었다고 보기 때문에** 업체 공문은 시기상 이미 수령한 상태여야 합니다.

1. FAQ

1

MD관련 자주 묻는 질문

5) 임대매장도 특약매장처럼 똑같이 MD하면 되는거 아닌가요?

임대차계약은 당사가 매장공간을 브랜드에게 상품의 판매 목적으로 임대한 것이며, 계약 내용이 특약매입의 경우와 차이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차이는 임대차 계약기간 동안의 영업을 보장해줘야 하는 점입니다. 상품군 하위 20% 해지 가능 조항도 임대차에는 적용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매장위치, 면적의 변경은 계약기간 중의 조건 변경에 해당할 경우, 업체의 유불리에 따라 매장이동 가능성 및 분담 여부가 판단됩니다.

- **계약기간 중의 면적 및 매장위치 변경**은 조건 변경에 해당하므로 업체의 의사에 반하거나, 업체에 불리한 매장변경은 불공정 행위로서 법위반 risk가 있으며, 이 경우, 인테리어 비용 등을 업체가 전부 부담하게 할 수 없습니다. (분담 필요)

만약 계약기간 중의 이동이 업체에 유리하거나, 이익이 되는 경우라면, 원계약에 대한 변경계약을 체결하여 원계약상의 면적, 위치 등을 수정하여야 합니다.

-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매장 이동**의 경우, 임차인이 '상가임대차보호법상의 갱신요구권'을 주장할 경우, 종전 거래조건과 동일한 계약갱신을 하여야 하며, 임대료 등 인상은 법에 정한 절차와 기준에 의거하여서만 변경 가능합니다.

만약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이동이 업체에 유리하거나, 이익이 되는 경우에는 이동 후 신규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1. FAQ

1

MD관련 자주 묻는 질문

6) 파트너사와 5:5 분담시 언제까지 분담금을 정산하여야 하나요?

당사 구매시스템을 통해 시공업체가 선정되는 경우에는 준공조서를 작성함으로써 익월 정해진 날짜에 시공업체에 비용이 지급됩니다.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업체가 선정한 시공업체가 공사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구매팀과 협의하여 업체선정의 적절성, 정산방법, 절차를 확인하고, 업체와 협의하여 기일 내 정산하여야 합니다.

1. FAQ

1

MD관련 자주 묻는 질문

7) '보상'은 뭐고, '분담'은 또 뭔가요?

| 구 분 | 인테리어 비용 보상 | 인테리어 비용 분담 |
|-----------|--|---|
| 적용기준 | 現 매장 기준 직전 인테리어 비용 | 이동 後 매장 기준 신규 인테리어 비용 |
| 적용시기 | 계약기간 中 매장이동 · 퇴점 時 (※자진철수, 업체부도 등 제외) | 매장이동 時 (※신규입점 제외) |
| 적용대상 | 파트너社 규모 관계 없음 | 파트너社 규모 · 재시공기간 別 상이 |
| 근 거 | 대규모유통업법 제 16조 (매장 설비 비용 보상 의무) | 특약매입 부당성 심사지침 (공정위 특약매입 표준계약서) |
| 보상 & 분담비율 | (직전 인테리어공사비-재활용집기)X (전체계약기간-영업일수)/전체계약기간 ※ 통상 인테리어공사 後 1년 이내 이동/퇴점 時 비용보상 | 중소기업의 불리한 매장이동時 당사 100% 비용부담 ※상세한 사항은 인테리어 비용 분담 가이드라인 참조 (P.31) |

2. 공정거래 Check LIST

2 공정거래 자율점검 현장 체크리스트

| 구분 | 체크리스트 |
|------------------------------|---|
| <p>계약서·약정서 체결 및 보존여부</p> | <p>① 당사 사용 기본계약서, 인테리어·판촉행사 약정서 <u>시행일 前</u> <u>사전체결</u></p> <p>② 전자계약시스템 (ECS 시스템) 사용</p> <p>③ 계약·행사 시작일 前 파트너사 서명 완료 必 (서명 미완료 時 계약 미체결 간주)</p> <p>[지류계약 체결時 유의사항]</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계약서·약정서 內 공란 기재 금지 2. '원본' 서류보존의무 준수 (계약종료된 날부터 5年) 3. 사후체결 금지 (워터마크 등으로 확인 가능) 4. 체결 後 즉시 전자계약시스템 (ECS) 업로드 (오프라인 계약時 / 부득이한 사유로 지류체결 時 소명자료 첨부) |

2. 공정거래 Check LIST

2 공정거래 자율점검 현장 체크리스트

| 구 분 | 체크리스트 |
|-----------------------|---|
| 경영정보 제공요구 금지 관련 | <div style="background-color: #f2f2e1; padding: 10px; margin-bottom: 10px;"> <p>① 중복 B/D (파트너사, 샵매니저 등) 통한 경쟁사 마진율 · 매출액 · 재고량 등 파악 금지</p> <p>② (법률이 정한 절차 외에) 정당한 사유 없이 경쟁사 입점 조건 파악 금지</p> </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ccc; padding: 10px;"> <p>[요구 금지되는 파트너사 경영정보]</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경쟁사 마진율 (임대료율), 보증금 등 입점 조건 2. 경쟁사 기간별 매출액, 판매액, 상품원가 등 매출 관련 정보 3. 경쟁사 판촉행사 정보 (시기 · 횟수 · 거래 조건 등) 4. 파트너사가 사용 중인 거래 관련 경쟁사 시스템 (Ex. EDI시스템)의 ID, PW 등 </div> |

2. 공정거래 Check LIST

2 공정거래 자율점검 현장 체크리스트

| 구 분 | 체크리스트 |
|-------|--|
| MD 관련 | <p>① 당사 『인테리어비용분담 적용(案)』 준수 : 컴플라이언스팀 既발송 업무협조건 참고 (컴플라이언스 업무지침 통보 [공정거래 Part]/ '19. 1月)</p> <p>② 당사 『인테리어 보상제도』 준수 (계약기간 中 매장이동 · 거래종료時 잔존 계약기간에 대하여 일할 보상) : 컴플라이언스팀 既발송 업무협조건 참고 (컴플라이언스 업무지침 통보 [공정거래 Part]/ '19. 1月)</p> <p>③ 당사 입퇴점 절차 규정 준수 : 관심브랜드통보공문, 거래중지통보공문, 거래중지합의서 체결 등</p> <p>④ 파트너社 자진철수時 증빙 서류(자진철수 공문 등) 구비</p> |

2. 공정거래 Check LIST

2 공정거래 자율점검 현장 체크리스트

| 구 분 | 체크리스트 |
|----------------------|---|
| <p>판촉행사 시행관련</p> | <p>① 판촉행사 일반 원칙</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방적 통보 등 파트너사 의사에 반하는 판촉행사 진행 금지 - 회의자료 등 내부분서에 오해의 소지 있는 표현 기재 등 불필요 문건(자료) 작성 금지 <p>② 공동판촉행사의 경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공동판촉행사 약정서 사전 체결</u> (당사 50% 이상 비용부담 必) - 각 영업점 컴플라이언스 담당자 합의 필수 ('19. 4. 8 부) <p>③ 파트너사의 자발적이고 차별화된 판촉행사의 경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파트너사 사전 공문 수령 後 진행 (파트너사 100% 비용 부담 가능) - 당사 회의자료 / 기안지 內 파트너사 행사내용 기재 금지 (기재 時 행사에 대한 先요청 등 당사 개입여부 오인) |

2. 공정거래 Check LIST

2 공정거래 자율점검 현장 체크리스트

| 구분 | 체크리스트 |
|-------------------------|--|
| <p>온라인 상품 판매 관련</p> | <p>① (대형행사·가격할인행사時) 혜택부여를 위한 상품목록 취합時 판촉행사 참여 강요 금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온라인몰 행사 테마별 파트너사 자발적 참여를 전제로, (당사 부담) 할인쿠폰 혜택 부여 등 파트너사에 유리할 경우, 상품목록 등 '단순 취합'은 가능하나, 추가 가격할인 강요· 물량 강요·감사품 증정 강요 등 판촉행사 강요로 오인될 수 있는 불공정 우려 행위 금지 (판촉사원에게 양식배부·작성 강요 및 제출 지시 금지) <p>② 할인쿠폰, 감사품 등 백화점 요청에 의한 행사時 사안별 검토 필요하며, 사전 컴플라이언스팀 내용 공유 필요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동판촉행사 판단 기준은 오프라인 매장과 동일 |

2. 공정거래 Check LIST

2 공정거래 자율점검 현장 체크리스트

| 구 분 | 체크리스트 |
|----------------------|---|
| <p>판촉사원 파견관련</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파트너사의 자발적인 판촉사원 파견·증원時 '동료사원 파견 약정서 체결' 등 절차 준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판촉사원 파견 강요·샵매니저 교체 등 일방적 구두 요청 금지 - 자발적인 판촉사원 추가 파견 時 사전 약정서 체결 後 근무 가능 ② 파트너사 및 샵매니저 등 판촉사원에게 판매목표 부여 및 달성 강요 금지 ③ 자체적인 상품 판매·관리 外 백화점 고유업무 종사 금지 (금지행위 : 휴게실 등 공용공간 청소 지시, 당사 정기재고조사 시행 협조, 옆 매장 고객 응대 지시 등) ④ 판촉사원 대상 권유판매 실적, 멤버십 모집 실적 등 강요 금지 ⑤ 내부분서(회의자료, 기안지)에 파견강요 등 오해 소지 있는 표현 금지, 불필요문건 작성 금지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10px; margin-top: 10px;"> <p>[오해의 소지 있는 표현 예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00月 매출 부진時 해당 샵매니저 즉시 교체요청 등 2. 000 행사 위해 파트너사 본사에 샵매니저 추가 파견 통보 </div> |

3. 공정위 직권조사時 행동요령

3 위기상황 초동대응 요령

- ① 공정위 현장방문時, 신분증 및 관련 공문 수령, 공문 내용 확인
 - 공문 기재사항 : 조사기간, 조사 대상 업체, 조사 근거 등
- ② 조사관 면담 요청 및 일정, 조사 내용, 조사 방법 확인
- ③ 유관부서에 조사 관련 내용 통보 (컴플라이언스팀 등)

※ 위치 : 그룹웨어 - 바로가기 - 사내시스템 內 (위기관리매뉴얼)

Chapter V

대규모유통업법 전문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 2018. 4. 17.] [법률 제15611호, 2018. 4. 17.,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 또는 매장임차인이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 보완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성장 및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10. 16.>

1. "대규모유통업자"란 소비자가 사용하는 상품을 다수의 사업자로부터 납품받아 판매하는 자(「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가맹본부"를 포함한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직전 사업연도의 소매업종 매출액(기업회계기준상 순액법에 의하여 수익을 인식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총매출액을 말하며, 가맹본부의 경우 소매업종 매출액과 가맹점사업자에게 판매한 상품매출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직전 사업연도의 사업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의 매출액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하 같다)이 1천억원 이상인 자
나. 매장면적(매장의 바닥면적에 100분의 95를 곱하여 산출된 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점포를 소매업에 사용하는 자
2. "납품업자"란 거래형태에 상관없이 대규모유통업자가 판매할 상품을 대규모유통업자에게 공급(대규모유통업자가 판매한 상품을 소비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자를 말한다.
3. "매장임차인"이란 대규모유통업자로부터 매장의 일부를 임차하여 소비자가 사용하는 상품의 판매에 사용하고 그 대가를 대규모유통업자에게 지급하는 형태의 거래를 하는 자를 말한다.
4. "직매입거래"란 대규모유통업자가 매입한 상품 중 판매되지 아니한 상품에 대한 판매책임을 부담하고 납품업자로부터 상품을 매입하는 형태의 거래를 말한다.
5. "특약매입거래"란 대규모유통업자가 매입한 상품 중 판매되지 아니한 상품을 반품할 수 있는 조건으로 납품업자로부터 상품을 외상 매입하고 상품 판매 후 일정률이나 일정액의 판매수익을 공제한 상품판매대금을 납품업자에게 지급하는 형태의 거래를 말한다.
6. "위·수탁거래"란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가 납품한 상품을 자기 명의로 판매하고 상품판매 후 일정률이나 일정액의 수수료를 공제한 상품판매대금을 납품업자에게 지급하는 형태의 거래를 말한다.

7. "반품"이란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받은 상품을 되돌려 주거나 납품업자의 다른 상품과 바꾸는 등 형식에 상관없이 납품받은 상품을 납품업자에게 실질적으로 되돌려 주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8. "판매촉진행사"란 명칭이나 형식에 상관없이 상품에 대한 수요를 늘려 판매를 증진시킬 목적으로 행하는 모든 행사 또는 활동을 말한다.
 9. "판매장려금"이란 명칭에 상관없이 직매입거래에서 상품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연간거래 기본계약에 명시된 조건에 따라 납품업자가 대규모유통업자에게 지급하는 경제적 이익을 말한다.
 10. "신선농·수·축산물"이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부패하기 쉬운 특성을 지닌 신선상태의 농산물·수산물·축산물로서 건조·염장 등 가공을 하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
- [시행일 : 2019. 4. 17.] 제2조

제2조의2(대규모유통업자의 의제) 매장을 임대하는 자로서 임차인으로부터 상품 매출액에 연동되는 임차료 또는 이에 준하는 경제적 이익(이하 "임차료등"이라 한다)을 수취하는 사업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6조, 제8조,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 제15조의2,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는 "대규모유통업자"로 본다.

1. 직전 사업연도에 자신이 임대한 매장에서 발생한 소매업종 매출액이 1천억원 이상인 자
2. 자신이 임대한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자

제3조(적용제외) ① 이 법은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 또는 매장임차인(이하 "납품업자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거래상 우월적 지위에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거래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거래상 우월적 지위에 있는지의 여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1. 유통시장의 구조
2. 소비자의 소비실태
3.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등 사이의 사업능력의 격차
4. 납품업자등의 대규모유통업자에 대한 거래 의존도
5. 거래의 대상이 되는 상품의 특성
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기업집단이나 하나의 대규모유통업자가 운영하는 유통업태의 범위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등 사이의 거래에 관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제4호 및 제5호(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는 제외한다)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등 사이의 거래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항에 따른 제조위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을 이 법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2장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

제5조(신의성실의 원칙)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등은 각자의 거래상 의무를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제6조(서면의 교부 및 서류의 보존 등) ① 대규모유통업자는 납품업자등과 계약을 체결한 즉시 납품업자등에게 거래형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거래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법에서 같다)을 주어야 한다.

② 제1항의 서면에는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등이 각각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이 법에서 같다)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③ 대규모유통업자는 제1항의 서면을 납품업자에게 줄 때까지 납품할 상품을 제조·주문하게 하거나 납품할 상품을 위한 설비·장치를 준비하도록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대규모유통업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서면으로 요구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납품업자등은 대규모유통업자가 제1항의 서면을 주지 아니하는 경우에 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사항을 대규모유통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계약 내용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⑤ 대규모유통업자는 제4항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내용에 대한 인정 또는 부인(否認)의 의사를 명시한 회신을 서면으로 납품업자등에게 발송하여야 하며 이 기간 내에 회신을 발송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4항에 따라 납품업자등이 통지한 내용대로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사변으로 회신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제4항의 통지에는 납품업자등이, 제5항의 회신에는 대규모유통업자가 각각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⑦ 제4항의 통지 및 제5항의 회신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⑧ 대규모유통업자는 납품업자등과의 계약이 끝난 날부터 5년간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등 사이의 거래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

⑨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대규모유통업자나 대규모유통업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사업자단체에 표준거래계약서의 작성 및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제7조(상품대금 감액의 금지) ① 대규모유통업자는 납품받은 상품의 대금을 감액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납품받은 상품이 계약한 상품과 다르거나 납품업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오손·훼손되었거나 상품에 하자가 있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해당 거래분야에서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기간 내에 상품대금을 감액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상품대금의 감액이 신선농·수·축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하여야 한다.

제8조(상품판매대금의 지급) ① 대규모유통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상품의 판매대금을 월 판매마감일부터 40일 이내에 납품업자들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특약매입거래로 납품받은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2. 매장임차인의 상품판매대금을 받아 관리하는 경우
 3. 납품업자로부터 위탁받아 상품을 판매하고 그 판매대금을 받아 관리하는 경우
- ② 대규모유통업자가 제1항의 상품판매대금을 월 판매마감일부터 40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 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이자율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 ③ 대규모유통업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상품판매대금 및 이자를 상품권이나 물품으로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상품 수령 거부·지체 금지) 대규모유통업자는 납품업자와 납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후 해당 상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수령을 거부하거나 지체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납품받은 상품이 납품업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훼손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상품의 반품 금지) ① 대규모유통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납품받은 상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품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해당 거래분야에서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기간 내에 반품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1. 특약매입거래의 경우로서 계약체결 시 반품조건을 구체적으로 약정하고 그 반품조건을 명시한 서면을 납품업자에게 준 경우
 2. 위·수탁거래의 경우
 3. 납품받은 상품이 납품업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오손·훼손되었거나 상품에 하자가 있는 경우
 4. 납품받은 상품이 계약한 상품과 다른 경우
 5. 대규모유통업자가 반품으로 인하여 생기는 손실을 스스로 부담하고 해당 납품업자에게 반품의 동의를 받은 경우
 6. 직매입거래의 경우로서 일정한 기간이나 계절에 집중적으로 판매되는 상품(신선농·수·축산물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계약체결 시 반품조건을 구체적으로 약정하고 그 반품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납품업자에게 준 경우
 7. 직매입거래의 경우로서 납품업자가 반품이 자기에게 직접적으로 이익이 된다는 객관적인 근거자료를 첨부한 서면으로 반품일 이전에 자발적으로 반품을 요청한 경우
 8.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가맹점사업자로부터 반품받은 상품을 가맹본부가 납품업자에게 반품하는 경우
 9. 그 밖에 직매입거래의 경우로서 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 ②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신선농·수·축산물의 반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11조(판매촉진비용의 부담전가 금지) ① 대규모유통업자는 판매촉진행사를 실시하기 이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판매촉진행사에 소요되는 비용(이하 이 조에서 "판매촉진비용"이라 한다)의 부담 등을 납품업자등과 약정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납품업자등에게 부담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의 약정은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등이 각각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대규모유통업자는 약정과 동시에 이 서면을 납품업자등에게 주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판매촉진비용의 부담비율은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등이 각각 해당 판매촉진행사를 통하여 직접적으로 얻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제적 이익(이하 이 조에서 "예상이익"이라 한다)의 비율에 따라 정하되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등 사이의 예상이익의 비율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등의 예상이익이 같은 것으로 추정한다.

④ 제3항에 따른 납품업자등의 판매촉진비용 부담비율은 100분의 50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납품업자등이 자발적으로 대규모유통업자에게 요청하여 다른 납품업자등과 차별화되는 판매촉진행사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대규모유통업자는 납품업자등과 상호 협의하여 판매촉진비용의 부담비율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2조(납품업자등의 종업원 사용 금지 등) ① 대규모유통업자는 납품업자등으로부터 종업원이나 그 밖에 납품업자등에 고용된 인력(이하 이 조에서 "종업원등"이라 한다)을 파견받아 자기의 사업장에서 근무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해당하는 경우로서 납품업자등과 사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파견조건을 서면으로 약정하고 파견된 종업원등을 해당 종업원등을 고용한 납품업자등이 납품하는 상품의 판매 및 관리 업무에 종사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대규모유통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파견된 종업원등의 인건비를 비롯한 제반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2. 납품업자등이 종업원등의 파견에 따른 예상이익과 비용의 내역 및 산출근거를 객관적·구체적으로 작성하여 명시한 서면에 따라 대규모유통업자에게 자발적으로 자신이 고용한 종업원등의 파견을 요청하는 경우

3. 특수한 판매기법 또는 능력을 지닌 숙련된 종업원등을 파견받는 경우

4. 특약매입거래를 하는 납품업자등이 상시적으로 운영하는 매장에서 상품의 특성상 전문지식이 중요하다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상품류를 판매·관리하기 위하여 종업원등을 파견받는 경우

② 제1항 단서의 서면에는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등이, 제1항제2호의 서면에는 납품업자등이 각각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③ 대규모유통업자는 자기가 고용한 자의 인건비를 납품업자등에게 부담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배타적 거래 강요 금지) 대규모유통업자는 부당하게 납품업자등에게 배타적 거래를 하도록 하거나 납품업자등이 다른 사업자와 거래하는 것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경영정보 제공 요구 금지) ① 대규모유통업자는 부당하게 납품업자등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납품업자가 다른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상품의 공급조건(공급가격을 포함한다)에 관한 정보
 2. 매장임차인이 다른 사업자의 매장에 들어가기 위한 입점조건(임차료를 포함한다)에 관한 정보
 3. 그 밖에 납품업자등이나 납품업자등의 거래상대방에 관한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정보
- ②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등에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영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경영정보 요구에 앞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요구목적,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등을 적은 서면을 해당 납품업자등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의 서면에는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등이 각각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 ④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등에게 경영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요구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

제15조(경제적 이익 제공 요구 금지) ① 대규모유통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납품업자등에게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금전, 물품, 용역,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규모유통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간거래 기본계약의 내용으로 판매장려금의 지급목적, 지급시기 및 횟수, 판매장려금의 비율이나 액수 등의 사항을 납품업자와 약정하고 이에 따라 납품업자로부터 판매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판매장려금은 해당 거래분야에서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범위를 넘을 수 없다.

제15조의2(부당한 영업시간 구속 금지) 대규모유통업자는 매장임차인이 질병의 발병과 치료의 사유로 인하여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영업시간의 단축을 요구함에도 이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등 부당하게 매장임차인의 영업시간을 구속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6조(매장 설비비용의 보상) 대규모유통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납품업자등이 지출한 해당 매장에 대한 설비비용 총액에 전체 계약기간(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는 계약기간을 1년으로 본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가 발생한 날부터 계약기간의 마지막 날까지의 기간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 이상을 해당 매장 설비비용에 대한 보상으로 납품업자등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납품업자등과 거래를 중단하거나 거절하는 행위
2. 납품업자등의 매장 위치·면적·시설을 변경하는 행위

제17조(상품권 구입 요구 금지 등) 대규모유통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납품업자등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상품권이나 물품을 구입하게 하는 행위
2. 통상적인 시장의 납품 가격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납품하게 하는 행위
3. 판매촉진행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통상의 납품수량보다 현저히 많은 수량을 납품하게 하는 행위
4. 납품업자등의 의사에 반하여 판매촉진행사에 참여하게 하는 행위
5. 한시적으로 인하하기로 약정한 납품 가격을 기한이 경과한 후에도 정상가격으로 환원하지 아니하거나 환원을 지연하는 행위
6. 납품업자등의 의사에 반하여 해당 납품업자등의 상품에 관한 광고를 하게 하는 행위
7. 일정한 점포의 매장에서 퇴점하는 것을 방해하거나 납품업자등의 의사에 반하여 자기의 다른 점포의 매장에 입점하게 하는 행위
8. 계약기간 중에 납품업자등의 매장 위치·면적·시설을 변경하는 행위
9. 계약기간 중에 판매장려금의 비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조건을 변경하는 행위
10. 그 밖에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것으로서 납품업자등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이익을 제공하게 하는 행위

제18조(불이익 등 금지) 대규모유통업자는 납품업자등이 대규모유통업자의 법 위반행위를 관계 기관에 신고하거나 알리는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납품업자등에게 불리하게 계약조건을 변경하는 행위, 납품이나 매장 임차의 기회를 제한하는 행위 또는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9조(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등 사이의 협약 체결)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등이 대규모유통업 관련 법령의 준수 및 상호 지원·협력을 약속하는 협약을 체결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등이 제1항에 따른 협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이행을 독려하기 위하여 포상 등 지원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협약의 내용·체결절차·이행실적평가 및 지원시책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제3장 분쟁의 조정 등

제20조(분쟁조정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 ①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등 사이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8조의2제1항에 따른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하 이 조에서 "조정원"이라 한다)에 대규모유통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은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대규모유통업자의 이익을 대표하는 위원, 납품업자등의 이익을 대표하는 위원으로 구분하되 각각 같은 수로 한다.

④ 위원은 조정원의 장이 추천한 사람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1. 대학에서 법률학·경제학·경영학 또는 유통 관련 분야 학문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제2호·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른 학교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2. 판사·검사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또는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3. 독점금지 및 공정거래업무에 관한 경험이 있는 4급 이상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4. 그 밖에 대규모유통업 분야의 거래 및 분쟁조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위원장은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중에서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⑥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⑦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보궐위원을 제4항에 따라 임명하거나 위촉하고, 그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21조(공익을 대표하는 위원의 위촉제한) ① 위촉일 현재 대규모유통업자 또는 납품업자등의 임직원으로 있는 사람은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으로 위촉될 수 없다.

②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으로 위촉받은 사람이 대규모유통업자 또는 납품업자등의 임직원인 경우에는 즉시 위촉을 해제하여야 한다.

제22조(협의회의 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 전원으로 구성하는 회의(이하 이 조에서 "전체회의"라 한다)와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1명, 대규모유통업자의 이익을 대표하는 위원 1명, 납품업자등의 이익을 대표하는 위원 1명으로 구성하는 회의(이하 이 조에서 "소회의"라 한다)로 구분한다.

② 전체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소회의에서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소회의가 전체회의에서 처리하도록 결정한 사항

2. 협의회 내부 규칙의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전체회의에서 처리할 필요가 있어 위원장이 전체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소회의는 제2항 각 호 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④ 전체회의는 위원장이 주관하며,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소회의는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이 주관하며, 구성위원 전원의 출석과 출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회의의 결과는 전체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⑥ 협의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중에서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⑦ 조정의 대상이 된 분쟁의 당사자인 사업자(이하 "분쟁당사자"라 한다)는 협의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관계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제23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정사항의 조정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조정사항의 분쟁당사자가 되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조정사항의 분쟁당사자와 친족관계이거나 친족관계였던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이나 법률사무소가 분쟁당사자의 법률·경영 등에 대하여 자문 또는 고문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경우
 4.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이나 법률사무소가 해당 조정사항에 대하여 분쟁당사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및 증언이나 감정을 한 경우
- ② 위원에게 조정을 공정하게 수행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분쟁당사자는 서면으로 협의회에 그 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 ③ 제2항의 기피신청이 제2항의 방식에 어긋나거나 조정의 지연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위원장의 결정으로 기피신청을 각하한다.
- ④ 제2항의 기피신청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의 결정으로 해당 위원을 조정에서 제외한다.
- ⑤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해당 조정사항의 조정에서 회피할 수 있다.

제24조(협의회의 조정사항) 협의회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의뢰하거나 분쟁당사자가 신청하는 사항으로서 제5조부터 제18조까지의 규정과 관련한 분쟁에 관한 사항을 조정한다.

제25조(조정 신청 등) ① 분쟁당사자는 제24조의 조정사항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서면을 제출하여 협의회에 그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분쟁조정 신청이 있기 전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제29조에 따라 사건을 조사 중인 경우는 제외한다.

-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등 사이의 거래와 관련한 분쟁에 관한 사건에 대하여 협의회에 그 조정을 의뢰할 수 있다.
- ③ 협의회는 제1항에 따라 조정을 신청받았을 때에는 즉시 그 조정신청사항을 분쟁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 ④ 제1항에 따른 조정의 신청은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 다만, 신청이 취하되거나 각하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2016. 3. 29.>
- ⑤ 제4항 단서의 경우에 6개월 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한 때에는 시효는 최초의 조정의 신청으로 인하여 중단된 것으로 본다.<신설 2016. 3. 29.>
- ⑥ 제4항 본문에 따라 중단된 시효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부터 새로이 진행한다.<신설 2016. 3. 29.>
 1. 분쟁조정이 이루어져 조정조서를 작성한 때
 2. 분쟁조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조정절차가 종료된 때

제26조(조정 등) ① 협의회는 제25조제1항에 따라 조정을 신청 받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조정을 의뢰 받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분쟁조정 절차를 개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6. 3. 29.>

② 협의회는 분쟁당사자에게 분쟁조정사항에 대하여 스스로 합의하도록 권고하거나 조정안을 작성하여 제시할 수 있다.<개정 2016. 3. 29.>

③ 협의회는 해당 분쟁조정사항에 관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조사를 하거나 분쟁당사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이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16. 3. 29.>

④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조정신청을 각하한다.<개정 2016. 3. 29.>

1. 조정신청의 내용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자가 조정신청을 한 경우
2. 이 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거나 제24조에 해당하는 조정사항이 아닌 사안에 관하여 조정신청을 한 경우
3. 제25조제1항 단서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조정신청을 한 경우

⑤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조정절차를 끝낼 수 있다.<개정 2016. 3. 29.>

1. 분쟁당사자의 한쪽이 조정절차 진행 중 조정을 거부한 경우
2. 조정의 신청 전후에 분쟁당사자가 법원에 소(訴)를 제기하였거나 조정의 신청 후에 분쟁당사자가 「중재법」에 따라 중재신청을 한 경우
3. 그 밖에 조정을 하여야 할 실익이 없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정절차를 끝내야 한다.<개정 2016. 3. 29.>

1. 분쟁당사자가 협의회에 권고 또는 조정안을 수락하거나 조정에 합의하여 조정이 이루어진 경우
2. 분쟁당사자가 협의회에 권고 또는 조정안을 수락하지 아니하여 조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3. 조정신청을 통지받은 날부터 60일(분쟁당사자 쌍방이 기간연장에 동의한 경우에는 90일)이 지나도 조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⑦ 협의회는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조정신청을 각하하거나 조정절차를 끝낸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정의 경위, 조정신청 각하 또는 조정절차 종료의 사유 등을 관계 서류와 함께 지체 없이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하고 분쟁당사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6. 3. 29.>

⑧ 공정거래위원회는 분쟁조정사항에 관하여 조정절차가 끝날 때까지 해당 분쟁당사자에게 제32조에 따른 시정명령이나 제33조제1항에 따른 시정권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미 제29조에 따라 조사 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6. 3. 29.>

제27조(조정조서의 작성과 그 효력) ① 협의회는 분쟁조정사항에 대하여 조정이 이루어진 경우 조정에 참가한 위원과 분쟁당사자가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한 조정조서를 작성한다. <개정 2016. 3. 29., 2018. 4. 17.>

② 협의회는 분쟁당사자가 분쟁조정사항을 스스로 조정하고 조정조서의 작성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조정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16. 3. 29.>

③ 분쟁당사자는 조정에서 합의된 사항을 이행하여야 하고, 이행결과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합의 및 이에 대한 이행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32조에 따른 시정명령이나 제33조제1항에 따른 시정권고를 하지 아니한다.

⑤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조정조서를 작성한 경우 조정조서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신설 2016. 3. 29.>

제28조(협의회의 조직·운영 등) 제20조부터 제27조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조직, 운영, 조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장 공정거래위원회의 사건처리절차 등

제29조(위반행위의 조사 등) ① 누구든지 이 법에 위반되는 사실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대규모유통업자에게 신고가 접수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6. 3. 29.>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에 위반되는 혐의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조사를 한 경우에는 그 결과(조사결과 시정명령 등의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의 내용을 포함한다)를 서면으로 해당 사건의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의 위반행위를 신고하거나 제보하고 그 신고나 제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제출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이 법 위반행위 및 포상금 지급대상자의 범위, 포상금 지급의 기준·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제1항 후단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규모유통업자에게 통지한 때에는 「민법」 제174조에 따른 최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신고된 사실이 이 법의 적용대상이 아니거나 제31조 본문에 따른 처분대상의 제한 기한을 경과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심의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하기로 한 경우, 신고된 사실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무혐의로 조치한 경우 또는 신고인이 신고를 취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2016. 3. 29.>

제30조(서면실태조사)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등 사이의 거래에 관한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그 조사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 공정거래위원회가 제1항에 따라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조사대상자의 범위, 조사기간, 조사내용, 조사방법, 조사절차 및 조사결과 공표범위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조사대상자에게 거래실태 등 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공정거래위원회가 제2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조사대상자에게 자료의 범위와 내용, 요구사유, 제출기한 등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제31조(처분대상의 제한)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에 위반되는 행위가 끝난 날부터 5년이 지난 경우에는 해당 위반행위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시정명령·과징금 부과 등을 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원의 판결에 따라 시정명령 또는 과징금 부과처분이 취소된 경우로서 그 판결이유에 따라 새로운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2조(시정명령) 공정거래위원회는 제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7조부터 제10조까지, 제1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2조부터 제18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대규모유통업자에게 법 위반행위의 중지, 향후 재발방지, 상품판매대금의 지급, 매장 설비비용의 보상, 계약조항의 삭제·수정,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거래상대방인 납품업자등에 대한 통지, 법위반행위의 시정에 필요한 계획 또는 행위의 보고나 그 밖에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33조(시정권고)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을 위반한 대규모유통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정방안을 마련하여 이에 따를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대규모유통업자가 해당 권고를 수락한 때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명령을 한 것으로 본다는 뜻을 함께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권고를 받은 대규모유통업자는 그 권고를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수락 여부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권고를 받은 대규모유통업자가 그 권고를 수락하였을 때에는 제32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34조(공탁) 제32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았거나 제33조제1항에 따른 시정권고를 수락한 대규모유통업자는 납품업자등이 변제를 받지 아니하거나 받을 수 없는 때에는 납품업자등을 위하여 변제의 목적물을 공탁하고 그 시정명령의 이행의무를 면할 수 있다. 대규모유통업자가 과실 없이 납품업자등을 알 수 없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35조(과징금)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제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7조부터 제10조까지, 제1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2조부터 제18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대규모유통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출방식에 따른 납품대금이나 연간 임대료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매출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등에는 5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과징금은 위반행위를 규정한 조문별로 산정하되, 그 합계가 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출방식에 따른 납품대금이나 연간 임대료의 2배를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징수에 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5조의3부터 제55조의8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5조의2(손해배상책임)① 대규모유통업자가 이 법을 위반함으로써 납품업자등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진다. 다만, 대규모유통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규모유통업자가 제7조, 제10조, 제12조, 제18조를 위반함으로써 납품업자등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법원은 납품업자등에게 발생한 손해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손해배상액을 정할 수 있다. 다만, 대규모유통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법원은 제2항의 배상액을 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고의 또는 손해발생의 우려를 인식한 정도
2. 위반행위로 인하여 납품업자등이 입은 피해규모
3. 위반행위로 인하여 대규모유통업자가 취득한 경제적 이익
4. 위반행위에 따른 벌금 및 과징금
5.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6. 대규모유통업자의 재산상태
7. 대규모유통업자의 피해구제 노력의 정도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손해배상청구의 소가 제기된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6조의2 및 제57조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8. 10. 16.]

제36조(위반행위의 판단시점) 공정거래위원회가 이 법에 위반되는 행위에 대하여 의결하는 경우에는 그 행위에 관한 심리를 마치는 날까지 발생한 사실을 기초로 판단한다.

제37조(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협조)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의 시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의 시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사를 의뢰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시정명령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조사의뢰 또는 자료요청을 받거나 제3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신설 2016. 12. 20.>

제38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준용) ① 이 법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의·의결에 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43조, 제43조의2, 제44조, 제45조, 제52조 및 제52조의2를 준용한다.

② 이 법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소(訴)의 제기 및 불복의 소(訴)의 전속관할에 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3조, 제53조의2, 제53조의3, 제54조, 제55조 및 제55조의2를 준용한다.

③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의견청취에 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50조의2 및 제50조의3을 준용한다.

④ 대규모유통업자가 이 법을 위반함으로써 납품업자등이 피해를 입은 경우의 손해배상 책임에 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56조의2 및 제57조를 준용한다.

⑤ 이 법에 따른 직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공정거래위원회의 위원 및 공무원 또는 협의회에서 분쟁의 조정업무를 담당하거나 담당하였던 사람에 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2조를 준용한다.

제5장 벌칙

제3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3조를 위반하여 납품업자등에게 배타적 거래를 하도록 하거나 납품업자등이 다른 사업자와 거래하는 것을 방해한 자
2.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납품업자등에게 정보 제공을 요구한 자
3. 제18조를 위반하여 납품업자등에게 불리하게 계약조건을 변경하는 행위, 납품이나 매장 임차의 기회를 제한하는 행위 또는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한 자
4. 제32조에 따른 시정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② 제38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감정을 거짓으로 한 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38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2조를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이 법의 시행을 위한 목적 외에 그 비밀을 이용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0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9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1조(과태료) ① 대규모유통업자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억원 이하,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각각 부과한다.

1. 제30조제2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한 자
2. 제38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자
3. 제38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제3호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보고 또는 필요한 자료나 물건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나 물건을 제출한 자
4. 제38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제2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② 대규모유통업자의 임원·종업원이나 그 밖의 이해관계인이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각각 부과한다.

- ③ 제6조제8항을 위반하여 계약서 등 중요 서류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④ 제38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3조의2에 위반하여 질서유지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사람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징수한다.

제42조(고발) ① 제39조제1항의 죄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고발하는 경우에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39조제1항의 죄 중 위반정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중대하여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질서를 현저히 저해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검찰총장에게 고발하여야 한다.

③ 검찰총장은 제2항에 따른 고발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음을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하여 고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공정거래위원회가 제2항에 따른 고발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결정하더라도 감사원장,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사회적 파급효과, 납품업자등에게 미친 피해 정도 등 다른 사정을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을 요청할 수 있다.<신설 2013. 7. 16., 2017. 7. 26.>

⑤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고발요청이 있는 때에는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검찰총장에게 고발하여야 한다.<신설 2013. 7. 16.>

⑥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소가 제기된 후에는 고발을 취소할 수 없다.<개정 2013. 7. 16.>

부 칙 <법률 제15469호, 2018. 3. 1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당한 영업시간 구속 금지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매장임차인이 영업시간 단축을 요구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포상금 환수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지급되는 포상금을 환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 칙 <법률 제15611호, 2018. 4. 17.>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법률 제15854호, 2018. 10. 1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 및 제18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의2 및 제38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하는 위반행위부터 적용한다.



롯데백화점 컴플라이언스 위반 신고센터

당사 「컴플라이언스팀」에서는 대규모 유통업법 위반행위 및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신고 및 제보를 받습니다.

신고사항을 공정하고 신속하게 처리하여 드리며, 신고인의 인적사항을 철저히 비밀로 보장하여 드립니다. 또한 신고로 인하여 당사로부터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도록 보호하여 드리겠습니다.

□ 우편신고 : 서울 중구 소공동 1번지 롯데백화점 內 컴플라이언스팀

□ 유선신고 : 02-2118-5282~5289

□ 인터넷신고 :

<https://www.lotteshopping.com/pr/kor/respon/compliance>

발행인 공정거래 자율준수관리자 준법지원부문장 이 설 아

발행부서 준법지원부문 컴플라이언스팀

발행연도 2019년